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및 쟁점 요약 (11.11 정리 내용)

- 1. 대부분의 시·도 지역에는 면적 10㎢ 당 약 5개 미만이 지정되어 있다. 시·군·구 지역에는 면적 1㎢당 임시주거시설이 1~2개 지정된 지역이 가장 많다.2) 면적 1㎢당 임시주거시설이 1개 미만 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3) 지역별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지역의 규모, 인구 등 여건을 바탕으로 지정 가능한 시설을 모색하여 적정 범위의 수를 도출한 경우는 없었다.**
- 2. 「재해구호법」에서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과 같이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한 경우는 약 2.9%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류가 재난 시 활용을 염두에 두고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지자체마다 유형별 분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정 시 지역 내 공공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유형을 고려하여 목록화한 지자체는 없었다. 관계부서 협조 등을 통해 일부 유형별 시설을 확인하여 지정 시설에 포함함에 따라(서류상으로 만 올려놓은 경우가 많다는 뜻인 듯), 실제 재난 시 실행 가능한 목록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웠다.
- 3. 전체 임시주거시설 중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약 35.7%로 전체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내진설계 적용 시설의 지정 비율은 대구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의 유형과도 관계가 있는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의 대부분은 학교이며, 그 외 유형에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의 비율이 낮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역 내 지정 가능한 시설의 내진설계와 같은 특정 조건, 이를테면 지역의 재난이력을 바탕으로 위험 및 취약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실상 내진설계 적용 여부뿐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 대한 검토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었다.
- 4. 즉, 국내 임시주거시설은 수 및 규모 부족 자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에 1만 5,026개가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시마다 어느 시설을 개시하고 운영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대피 및 임시 거주하도록 해야 할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며 초기 대응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발표, PPT에 참고할 만한 내용 요약 (11.25)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1만 5,026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재난 대응 목적에 따른 시설 구분

구분	대피시설	임시주거시설			
주요 목적	긴급대피	지속대피 및 임시거주(구호)			
시기	재난 발생 전, 후	재난 발생 전, 후~재난 복구			
종류	(지진) 옥외대피장소, 긴급대피장소 (전시, 재난) 대피시설 (방사능) 구호소 (폭염) 무더위쉼터 등	기존 건축물 ※ 내진설계 적용 시 지진겸용 시설로 사용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근거법	(재난유형별)「지진대책법」「민방위기본법」 「방사능방재법」 등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		
이용대상	재난 발생권역 내 피해 가능한 사람 (필요시 명령)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			
점유기간	5분~24시간 내외 최대 3~7일	5일 최대 6개월(필요시 연장)	12개월 최대 2년(필요시 연장)		
점유방식	동시 집중점유 및 해산	일시점유(고정도 낮)	일시점유(고정도 높)		
		※ 주거지와 병행 거주 또는 이동			
현황 (2022.12.)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대피시설 총 1만 7,519개 지정* ※ (예) 지하주차장, 공터 등	전국 1만 5,026개 지정 (지진겸용 5,048개) ※ (예) 학교, 체육시설 등	필요시 설치 및 철거 ※ 설치의 경우, 한 달 정도 소요		
	※ 대피시설 및 임시주거시설 일				

^{*} 그 외 지진옥외대피장소 1만 1,190개, 구호소 1,619개, 무더위쉼터 5만 2,421개 등 출처: 백선경 외(2023, p.3)

▶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및 쟁점

지역별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지역의 규모, 인구 등 여건을 바탕으로 지정 가능한 시설을 모색하여 적정 범위의 수를 도출한 경우는 없었다.

현재 임시주거시설은 총 여덟 가지(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관공서, 공공시설, 연수·숙박, 교회, 기타시설)의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분석 결과, 전체 중 약 95.4%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전체 중 많이 지정하는 시설은 학교(42.1%), 경로당(24.1%), 마을회관(15.0%) 순이며, 지역별로 지정하는 시설유형 비율의 차이가 있다. 한편, 「재해구호법」에서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과 같이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한 경우는 약 2.9%에 불과하다. 이러한분류가 재난 시 활용을 염두에 두고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지자체마다 유형별분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정 시 지역 내 공공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유형을 고려하여 목록화한 지자체는 없었다. 관계부서 협조 등을 통해 일부 유형별 시설을 확인하여 지정 시설에 포함함에 따라, 실제 재난 시 실행 가능한 목록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웠다.

전체 **임시주거시설 중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약 35.7%**로 전체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에서는 임시주거시설의 1인당 면적을 2.6m²로 제시하고 있는데, 시설별수용면적을 수용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면적을 확인한 결과, 그 면적이 2.6m² 미만인 시설은 약 1.7%로 나타났다.

임시주거시설의 시·도 수용률은 대부분 20% 미만으로, 충청남도는 수용률이 가장 높은 33.6%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수용률은 평균 17.3%이며

임시주거시설의 수용인원을 검토한 결과, 지정된 임시주거시설에는 이재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 수용 가능한 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어, 실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은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국내 임시주거시설은 수 및 규모 부족 자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에 1만 5,026개가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시마다 어느 시설을 개시하고 운영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대피 및 임시 거주하도록 해야 할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며 초기 대응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국내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지역	임시주거시설 (개)	시설 유형(개)			내진설계	수용인원	수용률	
		학교	경로당	마을회관	그외	(2計)	(1km당)	(%)
서울특별시	1,150	624	120	5	401	717	1,083	7.0
부산광역시	497	293	47	61	96	303	258	6.1
인천광역시	490	278	75	41	96	296	153	5.7
대구광역시	278	201	1	22	54	252	151	5,6
대전광역시	206	139	35	1	31	100	115	4.3
광주광역시	170	151	3	1	15	85	148	5.2
울산광역시	292	167	43	1	81	212	63	6.0
세종특별자치시	156	81	33	22	20	95	67	8.2
경기도	2,940	1,275	625	531	509	1,020	111	8.4
강원도	789	349	222	96	122	205	12	12.7
충청북도	819	298	338	77	106	197	25	11.5
충청남도	2,038	528	1,050	275	185	354	86	33.6
전라북도	587	300	81	9	197	307	39	18.
전라남도	1,777	515	467	484	311	316	44	30.4
경상북도	1,306	583	266	173	284	478	27	19.5
경상남도	1,364	526	111	421	306	389	34	10.9
제주특별자치도	167	14	98	38	17	37	16	4.5
합계	15,026	6,322 (42.1%)	3,615 (24.1%)	2,258 (15.0%)	2,831 (18.8%)	5,363 (35.7%)		

주: 수용률 = 임시주거시설 수용 인원 / 해당 지역 총인구(2022.12. 기준)

출처: 백선경 외(2023, p.83, p.90, p.94, p.97) 표에서 데이터 발췌하여 작성.

▶ 적정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위한 절차 개선 방안

지역 기본현황 검토단계에서는 지역 현황 및 재난 관련 이력을 확인하여 재난 관련 지역 특성을 진단하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공공건축물을 목록화한다. 적정 임시주거시설 선정 단계에서는 재난위험 및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수용규모를 검토하여 공공건축물 외에 민간시설의 추가지정 필요성 및 규모를 파악한다.